

禮山郡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管理 運營業務民間委託動議案

檢討報告

□ 提案理由

-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경제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시설물을 위탁 운영·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□ 主要骨子

- 위탁시기 : 2002. 1. 1 예정
- 위탁범위 : 시설물의 운영·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
- 위탁방법 : 관련시설물 이양 및 대여
-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 :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3조의2에 규정한 기관
※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탁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됨.
- 수탁기관선정 및 계약 : 원가 용역 결과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시설물관리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으로 조사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
- 계약기간 : 2년

□ 參考事項

-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
-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3조

□ 檢討意見

- 본 동의안은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시설에 대한 운영·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계획된 사항이므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
- 수탁기관선정도 원가용역 결과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시설을 관리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
- 다만 통합관리로 인한 관련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